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조례 개정안은

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

2022년 8월 발표한 ‘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’의 후속 조치로

개정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시행령에서

조례에 위임한 사항을

서울시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
○ 먼저, 역세권 등 민간재건축·재개발사업(뉴홈) 관련해서는

승강장 경계 350m 이내 지역 등으로 역세권 기준을 정의하고,

용적률 특례 관련 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과

공공분양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.

○ 공공재개발 관련해서는

사업성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며 공공임대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 
국민주택 규모 건설 비율을 개정하고  
공공분양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의 50%로 신설하였습니다.

○ 공공재건축 관련해서는

공공재개발과 유사한 공공성과 사업성을 유지하되  
용적률 상향의 범위차위를 고려하여  
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을 상향 조절하였으며  
공공분양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의 50%로 신설하였습니다.

○ 그리고 조례 개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

정비계획 수립 완료 및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의 경우  
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 
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한하여  
기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.

○ 또한, 현행 조례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

호수밀도 산정 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,  
신발생무허가건축물 외 무허가건축물인 ‘특정무허가건축물’에 대한 규정은

명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 
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무허가건축물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